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기초연금 시행 2년, 성과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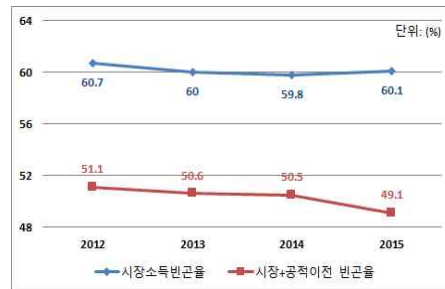
01 주요 내용

- 7월 25일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로 2016년 3월 기준 전체 노인 684만 명 중 454만 명, 66.4%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음(주간복지동향 53호 참조)
 -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기초연금법 제1조)으로 2014년에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변경한 것

〈전국 시도별 기초연금 수급률〉

	전국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강원
수급률	66.4	59.9	53.0	70.7	72.3	71.9	61.0	64.7	70.2
	광주	전북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수급률	66.9	76.4	82.7	68.7	64.1	77.3	73.4	70.0	61.0

-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이 70% 수준으로 준보편적 수당제도로써 노인의 빈곤해소와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
 - 기초연금 시행 전후 노인빈곤 추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 4분기 47.9%에서 2014년 동분기 43.8%로 4.1%포인트 감소
 - OECD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시장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의 시행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인해 빈곤율은 낮아지고 있는(51.1%→49.1%) 추세*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 · 복지조사(각 년도)

- 그러나 i) 기초수급자의 감액, ii) 기초연금액의 물가연동, iii)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iv) 지자체의 재정압박, v) 소득인정액 환산 등의 문제는 여전히 잔존*
 - i)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감액: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보충급여의 원리'에 따라 생계급여의 금액이 감액되는, 이른바 '줬다 뺀' 식의 지급으로 인해 수급 노인들의 소득보장효과나 빈곤율 개선효과는 매우 미흡
 - 기초생활수급 노인 36.5만 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다음 달 20일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
 - 보충성원리를 적용하기에는 그 근거인 생계급여의 기준이 너무 낮고, 최소극대화 원칙에 따라 가장 열악한 노인에게 급여수준을 우선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하므로 기초연금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 최근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 안(윤소하의원)이 발의되었고, 통과될 경우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36만 명*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내년에 약 9천억원(국비 7,180억 원, 지방비 1,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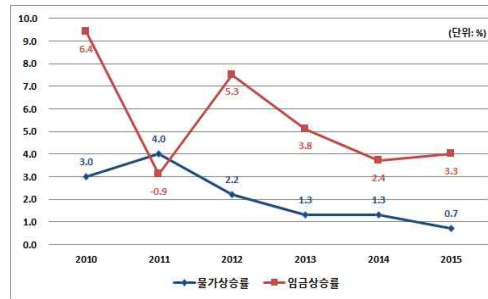
*이은영(2015). "기초연금제도 시행전후 노인가구의 가계수지 및 노인빈곤 추이 분석" 『연금 이슈&동향분석』 제23호

*오건호(2016). "줬다 뺀 기초연금, 이제는 해결하자" 양승조국회의원 토론회(7.13.)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함

*국회예산정책처 추계(2016) 기준

• ii) 기초연금액의 물가연동: 기초연금액 조정이 기존 소득연동에서 사실상의 물가연동으로 변화하여 수급액 증가수준이 낮아짐

- 최근 통계청 자료와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물가상승률보다 임금상승률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2015년 4월부터 전년도의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해 20만2,600원으로 올랐으나, 소득연동방식이었다면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인 3.2%가 증액돼 20만 6,400원 즉, 4,000원을 덜 받게 되는 결과 초래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저물가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물가연동은 미래 연금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정이 필요

• iii)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 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의 감액 폭이 늘어나는 구조이나, 사회보험과 (준)보편사회수당의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음

- 최근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법」에 제시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주간복지동향 58호 참조)

• iv) 지자체의 재정압박: 기초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연금액은 2배 인상이 되었으나 국고보조율은 기존 75%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 인상 비율만큼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증가

	총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국고부담률	지방비 부담률
전국	102,897	78,497	24,399	76.29	23.71
경기	17,996	12,804	5,192	71.15	28.85

자료 : 행복e음

- 또한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응 예산의 규모는 '14년~'18년간 연평균 13.9% 증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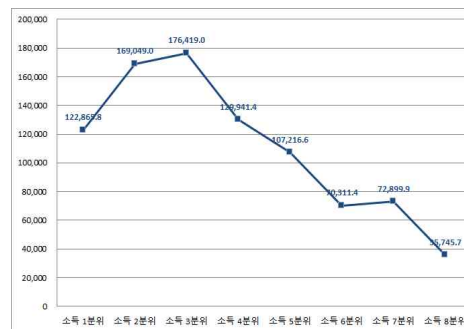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기초연금	5.2	7.6	7.9	8.2	8.8	13.9%

자료 : 2014~2018 NABO 재정 전망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인 만큼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

• v) 소득인정액 환산: 소득 1분위부터 소득 3분위 사이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평균 수급액이 증가하는 소득역전현상과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지역별 공제기준액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발생

-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및 기초수급자의 감액은 타 제도(주거급여)와의 조화성에 문제도 있는 만큼 복지부로 하여금 고시 개정 추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6), 기초연금제도 평가

*단위 : 억원, %

*단위 : 조원

02 경기도 시사점

• 기초연금이 노인빈곤해소와 생활안정을 위한 보편적 사회수당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 “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하며(주간복지동향 56호 참조), 노인 1인당 50만원(1인당 최저생계비 49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여 기본생활 보장
 - 소요 재원은 전체노인인 경우 6,670억 원, 기초연금대상자만 한정하면 약 4천억이며, 노인복지예산 1조 원 중 현금성 급여를 통합하여 경기도 노인 기본소득으로 전환하여 재원 확보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경기도 31개 사군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현황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형평성 분석을 위해 도내 31개 사군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경기 남부·북부 지역 간 사회복지 인프라 실태를 비교*

- 경기복지재단이 최근 연구를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검토하고, 복지 인프라 부족 지역에 대한 확충방안을 제시
 -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적 형평성 분석을 통해 시군별로 상이한 재정여건 및 관심도에 따라 좌우되는 복지인프라 격차를 진단
- 경기도에는 6,18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설치·운영 중이며 노인복지시설이 가장 많음*
 - 복지시설 수는 안산·고양·부천·수원·남양주·용인·화성·의정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복지시설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했을 때 노인·아동시설의 경우 이용시설의 비율이, 장애인·정신장애인·노숙인의 경우 생활시설의 비율이 높음
 - 분야별로 설치율이 낮은 시설유형은 노인복지주택·아동보호시설·장애인체육시설 등이며, 사회복지관은 7개 지역, 지역자활센터는 6개 지역에서 미설치

*출처: 경기복지재단(2016)

*경로당 포함 시 총 15,655개소

〈표 1〉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현황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장애인	기타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장애인	기타
남부	2,190	672	454	38	85	하남	70	12	9	0	2
수원	275	66	40	13	10	의왕	48	13	8	0	1
성남	166	62	43	3	12	여주	73	16	10	0	1
부천	338	68	28	2	12	양평	68	8	23	0	2
용인	209	37	43	3	2	과천	45	6	5	0	1
안산	493	97	46	2	7	북부	1,541	231	193	8	26
안양	84	31	14	0	4	고양	359	43	55	3	7
평택	112	34	24	3	3	남양주	273	57	25	1	5
시흥	155	42	20	1	8	의정부	239	31	18	1	4
화성	248	32	24	5	4	파주	174	22	23	1	2
광명	50	35	9	0	4	구리	62	15	13	0	2
군포	148	19	16	0	4	양주	125	22	13	0	1
광주	60	24	25	0	1	포천	131	14	24	0	2
김포	114	21	19	0	2	동두천	100	15	6	1	1
이천	48	16	20	0	0	가평	37	8	9	1	2
안성	89	21	22	2	2	연천	41	4	7	0	0
오산	42	12	6	4	3	계	3,731	903	647	46	111

주1) 경로당(남부 6,710개소, 북부 2,762개소)은 노인분야 시설합계에서 제외

주2) 기타시설은 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로 구성

*단위 : 개소

- 시설공급의 격차 분석결과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지역아동센터·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역자활센터는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
 - 반면 노인복지주택·아동보호치료시설·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노숙인요양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지역별 인프라 격차가 크게 존재
- 도민으로 하여금 거주지역에 따른 복지품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 공급수준의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노력 필요

2. 주요행사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2016년 경기도 사회복지정보센터사업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7. 21.(목) 14:00 ~ 16:00 • 장 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꿈꾸는컨벤션센터 • 주 제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역할과 기능변화” • 주 최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주 관: 24개 사군사회복지협의회

03 FACT CHECK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 줄어들까?

또 다시 찾아온 ‘감금의 시대’, 정신장애인에게도 탈시설 운동이 확대되어야할 시점에 형제복지원의 악몽이 재현되나(한겨레, 2016.6.23.일자 기사)

- 19대 국회 막판에 통과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처리 절차, 내용 등에 대한 장애인단체, 당사자, 의사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하여 '강제입원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 44조 2항의 '경찰의 행정입원 신청 요청권' 은 강남역 살인사건 후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고 말한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인권침해의 논란이 존재
- 치안과 사회보장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존재 격리대상’ 으로 보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 정신장애 환자를 병원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 우리나라의 정신장애 입원기간은 평균 116일로, OECD 평균 27.5일의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 OECD는 한국의 경우 정신건강 서비스가 주로 시설에 집중돼 있고 정신과 진료에 대한 낙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
- 정신장애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사회통합적 대응*이 필요
 -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질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부당한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한 사회전반의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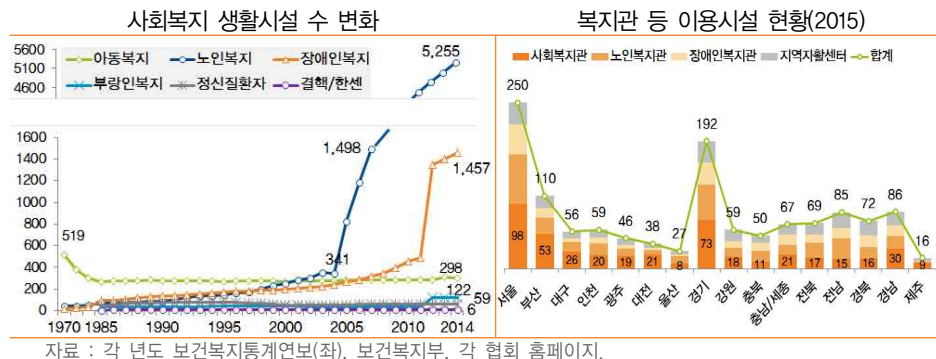
명칭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김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향신문, 2016.06.04. 기사)

04 통계로 보는 복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 2014년 말 기준,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총 7,197개
 - 사회변화로 아동생활시설은 1970년 519개에서 1985년 269개까지 감소 후 소폭의 등락을 유지
 -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2007년 1,498개였던 노인시설이 2009년 2,992개로 2년 사이 2배가량 증가, 2014년 현재 5,255개에 이룸
- 사회복지시설 네트워크의 거점역할을 하는 3종 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수는 서울이 250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도(192개소), 부산(110개소) 순임

*이용시설 수 노인복지관 : '15.12월 기준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이용시설이었던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거주시설로 편입하여 시설수가 증가